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목을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로 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별표 5의7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른 표준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수수료, 비용,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지원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33조의2제1항제2호”, “법인보험대리점”, “다음 각 호의” 및 “갓춘 임원 또는 직원(이하 “준법감시인”라 한다)을 두어야”를 각각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보험

대리점등은 제외한다)”, “별표 5의6의” 및 “모두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11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험 대리점(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7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11조의3을 삭제한다.

제4-11조의4를 삭제한다.

제7-4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별표 5의6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7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2 제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제4-36조제1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점검·확인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

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중 “제4-8조제3항”을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7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작성·변경 원칙에 대한 적용례) 제7-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7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리점'은 매 분기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 보험대리점(이하 이 조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요건 충족 후 3개월이 경과한 법인보험대리점을 말한다. 다만,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임원 또는 직원(이하 “준법감시인”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가.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

①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 별표 5의6의 ---- 모두 갖추어야 ----.

<삭 제>

<삭 제>

<삭 제>

런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  
감독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  
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2년이 지난 자

2. 보험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영 제19조의 금융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③ 준법감시인은 보험계약의 모  
집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서  
는 아니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  
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2  
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보험  
대리점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

의7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삭 제>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인사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삭 제>

⑥ 제1항의 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4-11조의3(장부 등의 작성비치)

<삭 제>

① 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장부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료수납부
2.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예금계정의 입금확인증철

4.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5. 회계장부

6. 그 밖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②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  
약건마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  
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  
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③ 보험대리점이 2개의 보험회  
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  
류를 보험회사별로 작성비치하  
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장  
부와 서류는 보험회사가 제공하  
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11조의4(보험대리점 시설 등)

<삭 제>

① 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외부  
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상호 또는 명칭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② 보험대리점은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험대리점은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①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손해보험(이하 "연금저축손해보험"이라 한다)의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② (생략)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① ~ ② (생략)  
<신설>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

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  
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  
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별지 1]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제1항 관련)

1.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라 한다)를 1명 이상 둘 것
  - 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1)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2년이 지난 자
  - 나. 보험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 다. 최근 3년간 영 제19조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제2호의 준법감시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가.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따르도록 할 것
  - 다. 준법감시인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인사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라.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통보할 것
4.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줄 것
  5.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것. 다만,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제4-36조제1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점검·확인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

[별지 2]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제4-11조제2항 관련)

1. 금지행위(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 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준수사항. 단, 가목의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1)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

2)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나.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1) 등록번호

2) 상호 및 명칭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다.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것

라.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할 것

바. 다음 각 세목의 장부 등을 작성·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험료수납부

2)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3) 사목에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예금계정예의 입금확인증철

4)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5) 회계장부

6) 그 밖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마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에 즉시 입금할 것

아.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별로 작성·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